
 국토교통부	<h1>보도자료</h1>		
	배포일시	2018. 1. 2(화) 총 3매(본문 2, 참고 1)	
담당 부서 녹색도시과	담당 자	• 과장 김명준, 사무관 이경섭, 주무관 송하연 • ☎ (044) 201-3751, 3754	
보도일시	2018년 1월 2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2(화) 10:30 이후 보도 가능		

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, 국무회의 의결

-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산림욕장, 유아숲체험원 등 허용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취지와 부합하는 일부 건축물을 허용하고,
 - 구역 내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행위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의 「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(이하 공원녹지법)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」이 국무회의를 통과(1.2)했다고 밝혔다.
- 금번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① 공원구역 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 확대 (시행령 제26조 별표 2)
 - 산림욕장, 치유의 숲, 유아숲체험원, 실외체육시설, 방재시설, 기상 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취지와 부합하고,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.
 - ② 취락지구 내 주민들의 행위제한 개선 등 (시행령 제27조 및 제33조)
 -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,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간 용도변경을 허용한다.

-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를 허용한다.

③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점용허가 정비 (시행령 제44조제5호 신설)

-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‘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’의 설치 허가기준을 시행령에 상향규정(현재는 행정규칙인 공원·녹지점용 허가지침에 규정)하고,
- 특히,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대지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였다.

□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,

-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<http://www.law.go.kr>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□ (지정대상) 도시자연공원구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용도구역으로,

-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,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·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

※ '16.12월말 기준 전국에 191개소(대구 7곳, 인천 20곳, 대전 5곳 등)

□ (지정절차) 도시·군관리계획 수립 절차에 따름

- 기초조사 → 계획안 작성 → 열람·공고 → 주민의견 청취 →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→ 관계 행정기관 협의 → 지방의회 의견수렴 → 결정 → 고시

□ (금번 제도개선)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 허가대상 등을 확대

<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범위 확대 >

건축물 또는 공작물	현행(기존 허가대상)	개선(허가대상 추가)
여가활용 시설	· 휴양림, 수목원 등	· 산림욕장, 치유의 숲, 유아숲 체험원, 실외 체육시설, 청소년 수련시설, 잔디광장, 야영장 등
공공용 시설	· 도로 및 교량, 철도 및 궤도, 공중화장실, 수도관, 하수도관, 공동구 등	· 방재시설, 기상시설, 국가의 안전·보안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,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등

<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행위 확대 >

현행(기존 허가대상)	개선(허가대상 추가)
· 농사를 위한 개간, 농로·임도의 설치,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	· 취약지구 내 주택 신축시 진입로 설치,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 등